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 단위 표현을 ‘학과’ 단위로 정비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35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과’ 단위 표현을 ‘학과’ 단위로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4. 7. 18.
3. 회부연월일: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 ‘과’ 단위 표현을 ‘학과’ 단위로 정비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 표현을 ‘학과’ 단위로 정비함으로써,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용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목적) ①·② (생략)	제41조(목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u>교육과</u> (이하 “ <u>교육과</u>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 ----- ----- ----- <u>하는 학과</u> -----“ <u>교육 학과</u> ”-----.
제44조(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u>교육과</u> 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4조(목표) ----- ----- <u>교육학과</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 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 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 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학위수여)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학과의-----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
-----학
과가-----

-----.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학과의-----

입학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조직으로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¹⁾ 이 중 ‘학과’는 ‘과’와 혼재되어 규정됨.

[표 1] 「고등교육법」 상 ‘학과’, ‘과’ 사용 조문

구분	조문 내용	
학과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 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 를 개설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 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과	제41조(목적)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u>교육과</u> (이하 “ <u>교육과</u>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4조(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u>교육과</u> 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구분	조문 내용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 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자료: 「고등교육법」 중 해당 조항 정리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 표현을 ‘학과’ 단위로 정비함으로써,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용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용어 정비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조직 단위 중 유사한 규모를 규정하는 용어를 ‘과’ 또는 ‘학과’에서 ‘학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또한 ‘학과’는 「사립학교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그리고 대학의 설립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 규정」²⁾에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로 일원화하여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표 2] 기타 법령의 ‘학과’ 사용 조문 예시

구분	조문 내용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 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 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학협력법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 ·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부나 유사한 학과 ·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 학과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 학과 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 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 학과 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 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 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

구분	조문 내용	
		는 학과 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研·産), 학·연(學·研)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 조정·상호조정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 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 「사립학교법」, 「산학협력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중 해당 조항 정리

다만, 대학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조직 단위는 190개 학교의 765개 과정 중 90.6%인 693개 과정이 ‘○○교육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학과’로 변경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학교의 행정적 처리 및 학교 구성원의 적응이 필요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조직 단위 현황

(단위: 교, 개)

구분		학교 수	교육과정 단위 수			
			합계	교육과	기타	
대학	교육대학	10	126	126	0	—
	일반대학	초등교육과	3	14	2	12
		교육과	61	108	90	18
		사범대학	46	421	391	30
	전문대학 교육과	73	96	84	12	12
	합계	190 ¹⁾	765	693	72	
대학원	교육대학원(양성)	87	727	0	727	○○교육, ○○전공(727)

주: 1) 3개 대학에는 초등교육과와 사범대학이 모두 설치됨

1. 2024년 5월 기준

2. 일반대 교직과정(학과 등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운영), 실기교사 양성학과(일반대·전문대 내 미용·조리학과 등) 제외

자료: 교육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 표현을 ‘학과’로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항 개정(안 제50조의2 제4항 및 제54조의2제4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 개정(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1조의2)에 대해서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 ‘교육과’³⁾⁴⁾와 학문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 ‘학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현재 대부분의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의 단위를 ‘○○교육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학과’로 개정할 경우 재학·졸업생의 혼동이 초래되고 행정 부담(학칙 개정, 학적 변경, 관련 규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2개 대학⁵⁾의 경우,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학문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현장에 이

3) 교육을 학문의 대상으로 다루는 교육학과 및 교육공학과는 제외함.

4) 구 「교육법」 개정(법률 제1435호, 1963.11.1. 개정) 이전부터 ‘교육과’로 통용된 것으로 파악됨.

예) 경성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1945)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1949)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1963)

* 교육과 관련 구 「교육법」 개정 내역

(법률 제86호, 1949.12.31. 제정, 공포일 시행) 제125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사범과를 둘 수 있다.

→ (법률 제1435호, 1963.11.1. 개정, 1964.1.1. 시행) 제125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계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교육과를 실업계대학(4年制에 限한다)에 둘 수 있다.

→ (법률 제2366호, 1972.12.16. 개정, 공포일 시행) 제125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4年制에 限한다)에 둘 수 있다.

5) 부산대학교, 충신대학교

미 자리 잡은 ‘교육과’를 ‘교육학과’로 변경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
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89